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4

언 론 사 주식회사 봉화일보(봉화일보)
경북 봉화군 내성로 121-1, 성광빌딩 203호
대표이사 권영석

심의대상기사 2026년 4월 13일자 1면 「봉화군수 후보 지지도… 박현국 35.6%로 선두, 최기영 27.8%로
뒤이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봉화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
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예비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
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조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5

언 론 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149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광탁

심의대상기사 [별지 1] 기재

-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외뉴스통신 홈페이지 정치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을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도지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 및 홍보 포스터와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었고, 이는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종은
박한신
김이장
홍은기
우형보
송진
래국태
천열
철연
진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3월 31일자 포토뉴스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제하의 기사
2. 2026년 4월 3일자 정치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충남 살리기 추경’당 지도부에 건의」 제하의 기사
3. 2026년 4월 9일자 정치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 제하의 기사
4. 2026년 4월 10일자 오늘의 핫뉴스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 제하의 기사
5. 2026년 4월 16일자 정치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첫 행보는 ‘청년·AI」 제하의 기사
6. 2026년 4월 20일자 정치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제하의 기사제하의 기사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 뉴스통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예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 및 홍보 포스터와 함께 여러 차례(2026년 3월 31일자 포토뉴스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등 6건)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재심1
(원심 : 제9회 지선-시심4)

재 심 청 구 인 서필상
경남 함양군

재심청구대상기사 2026년 4월 13일자 3면 「더불어민주당 송경열 함양군수 예비후보 당 공천 불복 민주당 중앙당에 공천재심 신청」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본문 중 “송경열 예비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사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해당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은 출마를 준비한 적도 없으니 ‘후보 사퇴 과정’ 자체가 없었고, ‘해당 후보 캠프’에서 ‘해당 후보’는 시정요구인을 가리키는데 기사의 근거가 되는 녹취록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녹취록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내용은 없으며, 녹취록 당사자가 신문사를 방문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음에도 언론사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면서 원심 결정의 취소와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원심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으며, 당시 위원회는 유권자 및 선거에 미칠 영향력과 양 당사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와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만큼 현 단계에서 원심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보도에 언급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적 주장에 대해 허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 게재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